

엔지니어링사업 []휴업 []폐업 신고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	즉시
신고인	상호		신고번호	
	대표자 성명		생년월일	
	본점 소재지			
	우편물 수령지			
	전화번호		팩스번호	
	홈페이지		이메일	
휴업(폐업)	사유		일시	

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 제2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또는 제10조 제1항에 따라 ([]휴업 []폐업) 신고를 합니다.

년 월 일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협회장 귀하

첨부서류	1. 휴업신고를 하려는 경우: 휴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. 폐업신고를 하려는 경우: 폐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---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협회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 중 하나인 폐업사실증명원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※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